

사(四)공(公)조(調)서(書)

부(部)장(長)명(命)령(令)

기안용지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 통제 | 기안처 건설국관리과 | 전화번호 조적기 2470P | 근거서 류첩 | 수일자 1962. 9. 21 |
| 수압 담임 | 관리과 장 | 건설국 장 | 부시 장 | 지재 장 |
| 관계 관 | 포항과 장 | 전결 | | 9/27 |
| 서명 | | | | |
| 기년 월 | 1962. 9. 27 | 시행 일 1962. 9. 28 | 보준 년 한 | |
| 분기 유호 | 전체 통제 | 중 결 | 서 기 장 | |
| 정수 참 | 유신 조 | 발 신 | | |
| 제 목 |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| | | |
| 1. 아현동 ~ 노고산동 간 및 서울역 ~ 도동 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조청코리 함 | | | | |
| 가. 아현동 ~ 노고산동 간 도로포장공사 | | | | |
| (1) 총 공사비 5,740,000 | | | | |
| (2) 부과총액 3,231,000 (공사비의 $\frac{65}{100}$) | | | | |
| (3) 감면액 334,935 (조례 제14조에 의거) | | | | |
| (4) 부과액 3,396,065 | | | | |
| (5) 납입자 金顯鳳 외 1,003 명 | | | | |
| 나. 서울역 ~ 도동 간 도로포장공사 | | | | |

160.4
336

서울특별시 7 2/5
106-1

| | | |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| 총 공사비 | 2,612,880 | (보상비포함) |
| (2) | 부과총액 | 1,698,372 | (공사비의 $\frac{65}{100}$) |
| (3) | 감면액 | 488,775 | (조례 제 13 조) |
| (4) | 부과액 | <u>1,209,597</u> | (24.3%) 5.2 2.2 |
| (5) | 납입자 | 김영성 회 126명 | |

안 =

“ 고시안 ”

서울특별시 고시 제 711 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로한 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

서기 1962년 월 일
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

1. 공사시공로선 ~ 아현동 ~ 노고산동간 도로포장공사
2. 공사의 종류 ~ 도로포장공사
3. 공사 착공년월일 1961. 5. 31
4. 공사 준공년월일 1961. 8. 29
5. 총 공사비 5,740,000.

- 6. 부담금 총액 3,731,000
- 7. 부과 구역 아현동, 북아현동, 대현동, 노고산동, 영리동
- 8. 부과 방법 일 시 부과

안 드

서울특별시 고시 제711 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의
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을
 부과한다

서기 1962년 1월 1일
 서울특별시 장 훈 태 일

- 1. 공사명 서울역 ~ 도동간 도로포장공사
- 2. 공사의종류 도로포장공사
- 3. 공사착공년월일 1961. 4. 18
- 4. 공사준공년월일 1961. 5. 20
- 5. 총 공사비 2,612,880
- 6. 부담금 총액 1,698,372
- 7. 부과 구역 도동 1가
- 8. 부과 방법 일 시 부과

